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근로자 등 투표시간 보장 안내 요청

1.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시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6월 6일)부터 선거일 전 3일(6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관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선거권자인 공무원 등 소속 직원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계법조문 1부.

2.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1부. 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수신자 인사혁신처장(복무과장), 행정안전부장관(선거의회과장)

★주임

윤경하

행정사무관

채정희

홍보과장

전결 2018. 5. 3.

김종국

협조자

시행 홍보과-1269

(2018. 5. 3.)

접수 복무과-2181

(2018.05.03.)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

/ <http://www.nec.go.kr>

전화번호 (02)503-2792

팩스번호 (0505)058-1159 / ygh978@korea.kr

/ 대국민 공개